

# e편한세상 석림 더노블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 청약 신청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본 아파트는 건본주택 운영이 종료되어 청약대상 세대 관림이 불가하고, 상품과 입지여건 등은 현장을 통해 확인하시고 청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준공된 아파트로서 계약취소된 주택을 기존 계약내용 그대로 분양함에 따라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최초 계약 당시 선택되었던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유상 옵션)을 반영하여 시공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을 모두 수락하는 조건으로만 공급계약의 체결이 가능하오니 청약을 신청하기 전 반드시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관련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일 이후 당첨자에 한해 개별 통보 후 당첨된 동호수의 세대 방문을 진행할 예정이며, 세대 방문 시 현황을 충분히 확인하시고 계약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계약취소주택으로 입주 시까지 분양대금과 추가선택 품목(발코니확장, 시스템에어컨, 플러스 유상옵션품목) 대금을 모두 납부하셔야 하며, 대출기관 알선은 진행되지 않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적용되었던 중도금 조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을 사업주체가 취득하여 재공급하는 주택(이하 “계약취소주택”이라 한다)**입니다. 청약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등 세부사항은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청약신청 자격 등을 위반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3.28.이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5.27. 입니다.**(이하 청약자격조건외의 기간, 나이, 거주지역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은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당첨자로 관리되나, 동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제한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신청이 가능한 주택입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3.28.)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 서산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는 세대주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경우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 단 외국인인 청약이 불가하며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한 세대주인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산시)에 거주하는 자에게 공급하므로 제23조제2항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본 아파트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본 아파트 무순위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청약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본 아파트는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 (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YESKEY)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APT무순위 / 임의공급 / 취소후재공급(계약취소주택)	O	O	X	X	X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일반공급은 대상 주택수의 5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본 공고의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까지 (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입니다.

■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멸기간이 지난 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해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다만, 제19조제5항 및 제47조의3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과의 계약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자발표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턴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전매행위 제한 등 관련사항 안내]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의한 분양권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일반공급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 제출	계약체결
일정	04월 02일(화)	04월 05일(금)	04월 05일(금) ~ 04월 09일(화)	04월 12일(금)
방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입주자공고문 내 계약 시 구비 서류 참조)	-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ul>	사업주체 사업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43번길 10, 309호 내 E-9호)	

※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하므로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발급 등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창구, 견본주택 접수 불가)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03.25.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서산시 주택과 - 11389호(2024. 3. 28.)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충청남도 서산시 석림동 969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20층 8개동 총 523세대 중 계약취소주택 2세대[일반공급 2세대]

■ 입주시기 : 본 주택은 준공된 아파트로 금회 공급하는 세대의 입주시기는 분양대금 및 추가선택 품목(발코니확장, 시스템에어컨, 플러스 유상옵션) 대금 등 입주시 납부의무가 있는 모든 금액에 대하여 완납 후 즉시 입주 가능

■ 공급대상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비율	총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민영 주택	2023930051	01	84.6387B	84B	84.6387	25.0057	109.6444	47.4576	157.1020	49.1013	1	1	-
		02	114.5288C	114C	114.5288	32.4789	147.0077	64.2173	211.2250	66.4415	1	1	-
	합 계											2	2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형 표기방식을 주거전용면적으로 표기하였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면적합산 시 소수점 자리에서 단소조정으로 계산한 값이 적용되어 소수점 자리로 산정하였으며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관리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실 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세대별 대지 비율은 공동주택의 총 대지비율을 주택형별 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 분양대금(공급금액) 및 납부 일정

(단위 : 세대, 원)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주택형 (약식표기)	동	호	해당 세대수	분양금액				계약금(10%)	잔금(9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84.6387B	84B	102동	902호	1	95,017,030	229,982,970	-	325,000,000	32,500,000	292,500,000
114.5288C	114C	107동	201호	1	127,751,220	289,317,073	28,931,707	446,000,000	44,600,000	401,400,000

### ■ 분양대금(공급금액) 납부 계좌 및 납부 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Sh수협은행	1010-2053-4739	교보자산신탁(주)
발코니 확장비	Sh수협은행	1010-2091-5408	교보자산신탁(주)
추가선택품목 공사비	우리은행	102동 902호	디엘이앤씨(주)
		107동 201호	
		2848-299511-8702	
		2848-299931-8045	

- 분양대금 / 발코니 확장비 / 추가선택품목 공사비 납부계좌가 각각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사업장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타인 명의 등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착오 입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 피해에 대해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음.)  
(예시 : 102동 902호 계약자 → '1020902홍길동')

### ■ 발코니 확장 공급 금액 및 납부 일정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 일정 및 금액	
		계약금 10% (계약시)	잔금 90%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84B	8,000,000	800,000	7,200,000
114C	9,000,000	900,000	8,100,000

- 발코니 확장 공사에 따른 유의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21.05.27.)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추가선택품목 공급 금액 및 납부 일정

- 추가선택품목의 비용은 분양가격 및 발코니 확장 비용과 별도로 부담해야하며, 해당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시공사 디엘이앤씨(주)와 고객간 직접 계약 및 설치가 진행됩니다.

약식표기	동호수	구분	공급금액 (원, 부가세 포함)	계약금(30%)	잔금(70%)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84B	102동 902호	삼성) 천장형 시스템에어컨_ 거실+침실1	3,450,000	1,035,000	2,415,000
		소계	3,450,000	1,035,000	2,415,000
114C	107동 201호	LG) 천장형 시스템에어컨_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7,900,000	2,370,000	5,530,000
		엔지니어드 스톤_ 주방가구 상판+주방벽+보조주방 상판	1,780,000	534,000	1,246,000
		시트판넬	1,350,000	405,000	945,000
		SK매직) 스팀 오븐레인지 (EON-B401SA)	650,000	195,000	455,000
		침실1 불박이장	2,400,000	720,000	1,680,000
		침실3 불박이장	850,000	255,000	595,000
		현관중문_3연동 슬라이딩 (브론즈 투명)	1,630,000	489,000	1,141,000
		소계	16,560,000	4,968,000	11,592,000

- 본 아파트는 공정상 추가선택품목의 설치가 완료되어 상기 추가선택품목에 대한 계약이 필수이며, 기 설치된 추가선택품목 외에 품목의 추가 및 기존 계약의 변경이 불가합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설치 완료된 품목이므로 계약체결 이후 계약해제는 불가합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세 내용은 추가선택품목 계약서에 기재하오니 계약체결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외에 추가선택품목 관련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1.05.27.)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공급 금액 납부 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비	Sh수협은행	1010-2091-5408	교보자산신탁(주)
추가선택품목 공사비	102동 902호	2848-299511-8702	디엘이앤씨(주)
	107동 201호	2848-299931-8045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사업주체에서 일체의 현금/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시 예시 : 506동 305호 계약자 → '5060305 홍길동')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동호별 추가선택품목 내역이 상이하며, 아파트 공급금액에 추가선택품목 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 세대별 해당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아파트 계약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 서산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세대주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않은 자 (외국인은 청약신청 불가)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 자격 제한기간 (공급질서교란자 또는 전매제한 위반자, 청약신청자 본인에 한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선정 제한기간 (부적격당첨자, 청약신청자 본인에 한함.)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별도 순위 없음)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

### Ⅲ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일반공급	2024.04.02.(화) 09: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li> <li>- PC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li> <li>- 스마트폰앱</li> </ul>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 청약신청일 09: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취소후재공급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취소후재공급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①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 ⇒ 「APT 취소후재공급 청약신청」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단,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기존과 동일한 절차 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방법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li> <li>•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li> </ul>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li> <li>•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li> <li>•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습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b>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b></li> </ul>

## I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 일정 및 계약장소

구분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당첨자 서류 제출	계약체결
일반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2024.04.05.(금)</li> <li>•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li> <li>*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4.04.05.(금) ~ 2024.04.09.(화) (10:00~15:00)</li> </ul> </li> <li>• 제출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주체 사업장 방문 또는 우편 제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43번길 10, 309호 내 E-9호)</li> <li>-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참조하여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4.04.12.(금) (10:00~15:00)</li> </ul> </li> <li>•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주체 사업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43번길 10, 309호 내 E-9호)</li> </ul> </li> </ul>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상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상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한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숲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4.04.05. (금) ~ 2024.04.14 (일) (10일간)
인터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li> <li>- 스마트폰앱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li> <li>※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gt; 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gt; APT당첨사실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li> </ul>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4.04.05 (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및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 당첨자 계약 체결 시 구비 서류

- 계약 체결 일시 : 2024.04.12.(금) 10:00~15:00 [계약체결일 및 시간은 코로나19 등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당첨자에 별도 통지할 예정입니다.]

- 계약 체결 시 구비 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본인	계약금 현장 수납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세대구성사유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용도 : 본인발급용 (대리인발급불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 접수 및 계약 불가
	○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시 본인 서명으로 대체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여권
	○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기간 : 출생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 현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 확인,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전자수입인지		인지세 납부 후 전자수입인지 지참
대리인	○		공통서류	본인	상기 공통서류 일체를 계약자 본인이 발급하여 대리인이 제출
		○	계약자의 인감도장	본인	인감도장 날인 및 대조용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본인	-발급일 확인 (인감증명서 용도 : 주택 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함.
		○	위임장	대리인	계약자의 인감도장 및 대리인 도장 날인(서명)
		○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여권

※ 상기 구비서류는 계약취소세대 모집공고일[2024.03.28.(목)]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경우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 바랍니다.

※ 상기 구비서류가 제출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이 가능하며, 당첨자의 적격 검증을 위하여 상기 구비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금 입금 영수증은 반드시 당첨자 본인이 입금한 영수증이어야 하며,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됩니다.

##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정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한다.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임차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임차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 각 호 및 제3조제1항의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한 경우

나. 임차주택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실제 거래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 이하(수도권은 3억원 이하)이며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 임차주택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임차주택에 거주한 경우

V

유의 사항 및 기타 사항

■ 하자 등에 따른 입주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청약하시기 전에 본 주택의 금회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여러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1개소, 경비실 2개소, 경로당 1개소, 어린이집 1개소, 작은도서관, 어린이놀이터 2개소, 유아놀이터 1개소, 그린카페 1개소, 주민운동시설 2개소, 주민편의시설(스크린골프 연습장, 피트니스, 실내배드민턴장, 라운지카페, 실내놀이터, 남/여 독서실 1개소, 스터디룸 1개소 등) 등

## ■ 기타 변경 사항 관련

### • 주차장 관련

- ※ 주차대수 : 703대(아파트 699대 / 근린생활시설 4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대수 포함)
- ※ 지하주차장의 높이는 (P1) 2.7m, (P2) 2.3m로 (P1)까지만 택배차량의 진입이 가능합니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지하 주차장의 높이가 2.7m(변경 전 2.1m)로 변경되어 택배차량의 진입이 가능해졌습니다.)
- ※ 지하주차장은 2개 층(지하 2층, 지하 3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본 아파트는 2019.03.01.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의 주차구획 확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승인 기준)
- 무인택배함의 위치가 주동출입구 지상에서 지하로 변경되었습니다.

## ■ 친환경주택의 성능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3항 21호에 의거,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구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고기밀 창호	적용	외기에 직접 면한 창별 1등급
고효율 기자재	적용	고효율 가정용 보일러(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전동기, 난방, 급탕 .급수 펌프제품 적용
대기전력 차단장치	적용	거실, 침실, 주방에 각 1개소씩 설치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세대 내 현관별도 회로로 구성된 일괄 소등 스위치 적용
고효율 조명기구	적용	세대의 조명기구는 '효율자재 운용규정' 및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 만족하는 조명기구 적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 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각실별 온도 조절장치 설치

## ■ 내진능력 : 본 건물은 건축구조설계기준(KDS411700)에 따라 내진능력Ⅷ로 계획되었음.

## ■ 차입형 토지신탁

1. 위 분양 건축물의 신축 및 분양사업은 (주)서산개발이 교보자산신탁(주)에게 사업부지 및 시행을 신탁하여 진행하는 차입형토지신탁사업으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주)서산개발임을 계약자는 인지하여야 합니다.
2. 본 계약의 각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보자산신탁(주)는 관련 법률 및 본 분양계약상 매도인의 제반 의무(분양대금 반환, 지체상금 배상, 하자보수책임을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는다)를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부담하며, 이를 넘는 책임은 (주)서산개발이 부담합니다.
3. (주)서산개발의 신탁계약상 위탁자의 지위가 양도되는 경우 계약자는 그 사실을 통지받은 시점에 양도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4. 계약자에게 위 분양목적물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는 시점과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중 빠른 시점에, 본 계약상 매도인의 지위 및 수탁자가 부담하는 제반 권리의무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주)서산개발(지위의 승계가 있을 경우 그 승계인)에게 면책적,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5. 분양대금은 토지비, 공사비, 대출금 상환, 기타 사업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 ■ 감리회사 및 감리계약금액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구분	감리회사명	감리금액	사업자 소재지
주택건설 공사감리	(주)상우공간건축사무소	1,826,749,100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35, 동관 17층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주)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무소	398,540,000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총민로 52 가든파이브웍스 D동
소방 공사감리	(주)씨에이파트너스	292,050,000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22대로 92, 605호
정보통신 공사감리		139,150,000원	

■ 사업주체명

구분	사업주체 겸 시행위탁자	사업주체 겸 시행수탁자	시공사
상호	(주)서산개발	교보자산신탁(주)	디엘이앤씨(주)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43번길 10, 309호 내 E-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교보타워 7~8층	서울특별시 중로구 통일로 134 디타워 돈의문
법인등록번호	134511-0133972	110111-1617434	110111-7736808

■ 본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1.05.2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청약홈(www.applyhome.co.kr))

■ 사업주체 사업장 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43번길 10, 309호 내 E-9호

■ 문의 : 031-786-0515

※ 본 모집공고의 내용은 최근까지(24.03.25.)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반영된 참고자료로서, 지역과 주택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